

원주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정 2019. 09. 01.

개정 2026. 10.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교육목표와 졸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이 지침에 의한다.

제1장 총칙

제3조 (교육목표) 의과대학은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명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두고, 교육목표는 6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

제4조 (졸업성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졸업 때까지 성취하여야 할 졸업성과와 하위졸업성과 (교육전략)를 두고, 2년마다 평가를 한다.

제5조 (시기별 교육과정) 교육목표와 졸업성과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 시기를 구분하여 의예과,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실습, 연구과정, 의료인문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의예과 시기는 의예과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2학기이며, 의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과정과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시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기초의학시기는 의예과 2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2학기이며, 기초의학교육을 위해 기초의학 총론 과정과 기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2) 임상의학시기는 의학과 1학년 1학기부터 의학과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이며, 기초의학, 임상의학교육을 위해 기초임상인문통합교육과정과 기타 임상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임상실습 시기는 의학과 3학년 1학기부터 의학과 4학년 2학기까지 4학기이며, 임상의학실습교육을 위해 필수 임상실습과 특과과정선택실습, 심화의학연구실습 및 자율선택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 의료인문학은 각 학년별로 배치하여 교육목표와 졸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5. 연구과정은 각 시기별로 배치하여 교육목표와 졸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 역량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6조 (학습성과) 교육목표와 졸업성과의 달성을 위해 학습성과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각 시기에는 졸업성과를 반영하는 시기별 학습성과를 제시한다.
2. 각 과정에는 시기별 학습성과를 반영하는 과정별 학습성과를 제시한다.
3. 각 수업에는 과정별 학습성과를 반영하는 수업별 학습성과를 제시한다.

제7조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①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은 성과중심교육으로 운영한다.
 - ③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은 전통적 교육과정과 기초임상인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통합형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④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⑤ 인성 함양과 가치관 수립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
 - ⑥ 졸업 후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근거중심의학과 연구 과정을 강화한다.
2. 교육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간표를 편성한다.
 - ① 자기주도학습 시간 확보와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을 위해 강의식 수업시간은 1일 4~6시간으로 한다.
 - ② 시험 전 학생들이 최대한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배정한다.
 - ③ 수업내용은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중복이 없어야 한다.
 - ④ 피드백 시간을 배정한다.
3. 교육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업 내용을 선정한다.
 - ① 과정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이 성과는 수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② 각 수업의 내용은 서로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③ 교육내용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기초의학은 핵심 의과학 지식,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과학적 사고와 연구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며, 임상의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료현장에서 접할 임상표현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4. 교육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학생을 평가한다.
 - ① 과정별로 제시한 과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학생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다양한 교육방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생들이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정보를 익히는 경향을 줄이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험횟수는 2회 이상 실시를 권장한다.
 - ⑤ 평가 기준은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공지된 내용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⑥ 평가는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⑦ 평가내용은 가능한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⑧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정은 대학학사일정에 따른다.

제8조 (재학습 기회 제공)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시기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내 재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재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의과대학 재학습 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선택 과목을 운영한다. 임상의학 시기에서 선택과목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기초, 임상,

인문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방법 선택과목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 (교육과정의 분석과 평가, 개선: 교육평가체제)

교육과정 평가 위원회에서 학기별 또는 시기별로 분석된 내용을 평가하고, 질관리위원회는 이를 이용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평가체제를 운영한다.

1. 학생

- ① 매 학기 학사포탈 수업(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② “Caritate Tua Workshop”- 교육평가를 위한 학년별 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
- ③ 매 학기 과목별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2. 과정책임교수

- ① 과정을 시작하기 전,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이 종료된 후에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과정 평가는 다음의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유한다.

과정 시작 전 회의	◆ 수업계획표 탑재 및 수정 ◆ 각 수업별 학습성과 및 교수 학습방법 결정 ◆ 각 수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검토 ◆ 다양한 평가방법 및 형성/총괄평가의 조화
과정 종료 후 회의	◆ 과정 진행에서 발견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개선 계획 ◆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검토
학생 대상의 집중 면담	◆ 과정에 맞는 학습성과가 제시되었는가? ◆ 학습성과가 달성되었는가? ◆ 예측하지 못했던 긍정적·부정적 결과가 있었는가? ◆ 기타
설문조사	◆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시 ◆ 과정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결과를 근거로 - 의도한 학습성과(과정성과)에 도달하였는가? - 학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평가되었는가?

- ③ 과정 평가 후 CQI보고서를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평가위원회

- 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과 내용을 포함한다.

학생 평가 결과 (학년별)	“Caritate Tua Workshop” - 교육평가를 위한 학년별 학생 토론회 평가결과 검토 - 학사포탈 수업(강의)평가 검토
과정평가 (학기말 회의)	- 각 과정이 대학에서 의도한 교육성과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 - 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 각 과정에서 학생들의 향상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했는가? - 각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는가?
교육의 과정평가 (학년별 , 시기별)	- 교육과정(‘Caritate Tua 2018’)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에서 확인된 불충분한 성취, 약점, 문제점 파악, 개선 -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 평가

② 교육과정평가위원회는 매 학기 교육과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질관리위원회

교육과정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매 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5.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활용한다.

제11조 (교육과정 피드백)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피드백을 실시한다.

1. 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인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학습자 중심으로 피드백을 실시한다.

제12조 (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교육) 교육과정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 관련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1. 교육 담당 교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의학교육 관련 연수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신입교원은 발령 후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의학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책임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교육책임교수(Chief Coordinator for Medical Education)는 기존의 행정을 주관하는 주임교수와는 달리 각 과정 교육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제14조 (교육책임교수 임명과 대상)

1. 교육책임교수의 임명은 과정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의 의견과 추천에 근거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2. 교육책임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1항에 의거 추천된 경우와 임상실습 교육책임교수는 비전임교원도 대상 교수에 포함된다.

3. 의과대학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액의 교육과정운영비를 교육책임교수에게 지급한다.

제15조 (평등원칙 및 적용)

1.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신체조건,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적용하여 운영한다.
2.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

제2장 의예과 교육

제16조 (의예과 교육의 목적) 의예과 교육은 의학교육을 위한 기초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의예과 교육과정의 구성) ① 의예과 교육과정은 자연과학, 의과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타 연세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양과목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② 의예과 1학년은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제18조 (의예과 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의예과 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의예과분과를 거쳐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의예과 교육과정 책임교수)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제19조의1(의예과 교육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

1. 수업계획표와 학습성과를 작성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2. 수업에 적합한 교수를 배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한다.
3. 과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학생평가를 위하여 시험일정, 성적평가 원칙수립, 평가비율 설정 등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성적 및 출석 부진 학생을 관리한다.
6. 수업 종료 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7. 각 과정 시작 전후에 참여교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상위 위원회에 전달한다.

제3장 기초의학 교육

제20조 (기초의학 교육의 목적) 기초의학은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과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기초의학 교육과정의 구성) 기초의학 교육과정은 기초의학시기의 기초의학 총론과정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기초의학 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기초의학 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

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초의학분과를 거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23조 (기초의학 교육과정 책임교수) 기초의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제24조 (기초의학 교육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

1. 수업계획표와 학습성과를 작성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2. 수업에 적합한 교수를 배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한다.
3. 과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학생평가를 위하여 시험일정, 성적평가 원칙수립, 평가비율 설정 등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성적 및 출석 부진 학생을 관리한다.
6. 수업 종료 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7. 각 과정 시작 전후에 참여교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상위 위원회에 전달한다.

제4장 기초임상인문 통합교육

제25조 (기초임상인문 통합교육의 목적) 기초임상인문 통합교육(이하 통합으로 명칭한다)은 종합적인 의학교육을 목표로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등 여러 의학 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 습득의 효과를 배가하고 인격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통합교육의 구성) 통합교육은 임상의학시기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제27조 (통합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통합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현황, 자료 및 평가를 토대로 기초·임상의학통합분과(Ⅰ,Ⅱ)를 거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28조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 통합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필요한 경우 책임교수는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단, 책임교수(임상)-부책임교수(기초), 책임교수(기초)-부책임교수(임상)만 인정)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제29조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

1. 수업계획표와 학습성과를 작성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2. 수업에 적합한 교수를 배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한다.
3. 과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학생평가를 위하여 시험일정, 성적평가 원칙수립, 평가비율 설정 등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성적 및 출석 부진 학생을 관리한다.
6. 수업 종료 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7. 각 과정 시작 전후에 참여교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상위 위원회에 전달한다.

제29조의1(통합교육과정 부책임교수의 역할)

부책임교수는 책임교수와 협력하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5장 임상실습 교육

제30조 (임상실습의 목적) 임상실습은 일차의료에 필요한 필수적인 임상 지식과 술기, 태도 및 사회적 역량을 습득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임상실습의 구성) 임상실습은 필수실습과정과 선택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필수실습과정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등의 주요 임상과목 실습과 기타 임상과목, 선택 실습과정에는 특과과정선택실습과 자율선택실습 등이 포함된다.

제32조 (임상실습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임상실습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임상실습분과를 거쳐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임상실습 책임교수) 각 임상실습과정은 해당 과정의 임상실습 책임교수가 운영한다. 임상실습 책임교수는 학장이 임명한다.

제34조 (교육담당 전공의 및 전임의 임명과 대상)

1. 교육담당전공의 및 전임의의 임명은 교육책임교수의 의견과 추천에 근거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1년 단위로 한다.
3. 교육담당 전공의 및 전임의 임명을 원칙으로 하되, 교실 상황 및 교육 여건에 따라 전문의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35조 (임상실습 책임교수 권한과 책임)

1. 임상실습 과정의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실습지침서 등을 제작한다.
2. 임상실습 과정의 실습 기간과 시간을 고려하여 실습수업 주제 및 담당 의사를 배정한다.
3. 학생평가를 위하여 임상실습시험 일정, 성적평가 원칙수립, 평가비율 설정 등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진료수행, 임상술기 역량이 부족한 학생을 관리한다.
5. 임상실습 종료 후 실습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6. 임상실습 전후에 실습 교육 참여 의사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상위 위원회에 전달한다.

제36조 (교육담당 전공의 및 전임의 권한과 책임)

1. 실습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2. 실습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37조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1. 임상실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한다.
 - ① 실습계획 수립(임상실습 편성표 작성)
 - ② 실습책임교수 및 교육담당 전공의 선정하고, 교육담당 전공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훈

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실습 항목에는 학생이 의사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수술처치, 환자진찰, 초진환자면담, 모의처방, 의무기록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외래환자중심실습(외래 참관 등)은 주당 36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임상수행능력은 각 실습항목별로 의사국가시험[실기] 평가목표집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 ⑥ 학생들이 실습 시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 ⑦ 임상실습지침서와 체크리스트는 실습 전에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 오는 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작성할 항목과 평가 방법을 공지하도록 한다.
 - ⑧ 임상실습지침서는 학생들이 매일 지참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포트폴리오 또는 체크리스트는 꼼꼼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체크리스트는 학기가 종료되면 행정부서로 제출한다.
 - ⑩ 실습평가는 학생들이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에 반영한다.
 - ⑪ 지필시험은 성적반영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임상실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분석, 평가, 개선한다.
- ① 과정성과 달성
 - ② 실습평가반영 비율의 적절성과 일치성
 - ③ 임상술기능력을 실시와 성적반영
 - ④ 실습지도 감독의 적절성
 - ⑤ 피드백

제6장 연구과정 교육

제38조 (연구과정의 목적) 학생들이 연구를 경험하고 평생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실시한다.

제39조 (연구과정의 구성) 연구과정은 아래와 같이 시기에 따라 시행한다.

- ① 의예과와 기초의학 시기에는 의학연구방법과 의통계를 익힐 수 있는 과정을 시행한다.
- ② 임상의학 시기에는 기본 연구 과정과 근거 중심 의학 과정을 시행한다.
- ③ 임상실습 시기에는 학연구실습 과정과 선택실습과정으로는 심화의학연구실습을 시행한다.

제40조 (연구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연구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연구과정분과를 거쳐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41조 (연구과정 책임교수) 각 연구과정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제42조 (연구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

- 1. 수업계획표와 학습성과를 작성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수업 및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 2. 수업에 적합한 교수를 배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한다.

3. 과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학생평가를 위하여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성적 및 출석 부진 학생을 관리한다.
6. 수업 종료 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7. 각 과정 시작 전후에 참여교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한다.

제7장 의료인문학 교육

제43조 (의료인문학의 목적) 학생들이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를 따뜻한 태도로 대하면서 더 훌륭하고 행복한 의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을 실시한다.

제44조 (의료인문학의 과정의 구성) 의료인문학과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① 매 학년 환자-의사-사회(I~VI) 과정을 시행한다.
- ②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예과 1학년에서 전인활동 과정을 시행한다.
- ③ 그 외에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안전, 국제협력과국제의료, 기독교와의학 등의 과목을 운영한다.

제45조 (의료인문학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의료인문학 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의료인문학분과를 거쳐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46조 (의료인문학과정 책임교수) 각 의료인문학과정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둔다.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제47조 (의료인문학과정 책임교수의 권한과 책임)

1. 수업계획표와 학습성과를 작성한다. 과정에서 필요한 수업 및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2. 수업에 적합한 교수를 배정하고, 시간표를 조율한다.
3. 과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학생평가를 위하여 성적처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성적 및 출석 부진 학생을 관리한다.
6. 수업 종료 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7. 각 과정 시작 전후에 참여교수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한다.

제8장 시기성과 평가시험

제48조(시기성과 평가시험) 시기성과 평가시험은 의과대학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시기별 성과에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49조(시기성과 적용범위) 시기성과는 의예과·기초의학시기, 임상의학시기, 임상실습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각 시기별 평가시험에 적용한다.

제50조(의예과·기초의학시기성과)

1. 의예과·기초의학시기성과는 의예과 교육과정과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시기성과를 평가한다.
2. 의예과·기초의학시기성과는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에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제51조(임상의학시기성과)

1. 임상의학시기성과는 기초임상인문통합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시기성과를 평가한다.
2. 임상의학시기성과(Ⅰ)은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2학년 1학기에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3. 임상의학시기성과(Ⅱ)은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에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제52조(임상실습시기성과)

1. 임상실습시기성과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시기성과를 평가한다.
2. 임상실습시기성과는 의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3. 임상실습시기성과는 진료수행평가(Ⅰ, Ⅱ, Ⅲ), 임상종합시험(Ⅰ, Ⅱ), 졸업시험으로 한다.

제9장 의학교육종합평가

제53조 (의학교육종합평가의 목적) 의학교육종합평가는 의과대학 교육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제54조 (의학교육종합평가의 적용범위) 의학교육종합평가란 기초의학종합평가와 임상의학종합평가를 말한다.

제55조 (기초의학종합평가)

1.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의과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의학 기본지식 및 통합적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2.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의학과 1학년,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제56조 (임상의학종합평가)

1. 임상의학종합평가는 일차 진료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의학 필수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2. 임상의학종합평가는 의학과 2학년, 3학년 및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Caritate Tua 2018”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15조」는 2021. 4.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 「제42조 및 제46조」는 2022. 5.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이 지침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2조」는 2023. 3. 1일부로 적용한다. 단,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지침 「제 8조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지침 「제5조 3항 개정, 제5조 5항 삭제 및 신설, 제6조 3항 개정, 제7조 4항 7호 개정, 제9조 개정, 제10조 개정, 제10조 1항 1호 개정, 제10조 2항 2호 개정, 제10조 3항 개정, 제10조 4항 신설, 제10조 5항 개정, 제11조 개정, 제14조 2항 삭제 및 개정, 제14조 3항 신설, 15조 제목개정, 제15조 2항 개정, 제17조 개정, 제18조 개정, 제20조 개정, 제21조 개정, 제22조 개정, 제4장 제목개정, 제24조 개정, 제25조 개정, 제26조 신설, 제27조 개정, 제28조 개정, 제29조 개정, 제5장 제목개정, 제32조 개정, 제34조 신설, 제35조 개정, 제36조 신설, 제37조 개정, 제37조 4항 개정, 제6장 제목개정, 제38조 개정, 제39조 개정, 제39조 3항 개정, 제40조 신설, 제41조 신설, 제42조 신설, 제7장 신설, 제43조 신설, 제44조 신설, 제45조 신설, 제46조 신설, 제47조 신설, 제8장 제목개정, 제48조 개정, 제49조 개정, 제50조 개정, 제51조 개정, 제52조 개정, 제9장 제목개정, 제53조 개정, 제54조 개정, 제55조 개정 및 제56조 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이 지침 「제10조 1항 3호 신설, 2항 3호 개정, 3항 2호 개정, 4항 개정, 5항 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이 지침 「제14조 3항 개정, 제28조 개정, 제29조의1 신설」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이 지침 「제19조 개정 및 제19조의1 신설」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이 지침 「제10조 3항 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